

2022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11. 21. ~ 11. 25.(5일)
- 감사범위 : 2018. 02. 24.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5명

II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건)			재정상(천원)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계	환수	부과	추징	계	훈계	경징계	중징계
계	15	4	11	233	233	-	-	1	1	-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3	9	233	233	-	-	1	1	-	-
현 조치요구	3	1	2	0	-	-	-	-	-	-	-

III 주요 지적사항 요약

1 예산회계, 계약분야

1)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법인카드 발급대장 미작성, 비밀번호 미변경, 사용내역 인수인계 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법인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별로 부여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나,

- 보건소에서는 법인카드 발급 시 법인카드 발급대장(2015년 ~ 2019년)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회계담당자)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사용내역을 인계인수한 사실이 없는 등 법인카드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정원 외 직원(기간제, 파견자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직원) 운영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집행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외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자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방침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 보건소에서는 수감기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정원 외 직원(기간제)을 제외한 부서 정원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기간제에 대해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 □□□□□ 기간제노동자 등 격려 만찬 제공' 등 총 2건 315,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청소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소홀

용역 대금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미확인(미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보건소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센터 청소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용역 대금(기성 및 완료)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도, 보험료 정산관련 자료를 추가 요청하지 않는 등 보험료 사후정산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4)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체결 및 처리 확인 소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시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미구분

- 의료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를 구분·기재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에 처리량을 곱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보건소에서는 2020년~2021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운반단가와 처분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탁처리업체의 월별 청구서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분야

1) 시설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대가 산정 부적정

실시설계용역 대가 산정 부적정, 2,355천원 과다 산정

- “보건진료소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 설계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대가 산정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대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견적서를 받아 발주하여 실시설계용역 대가를 2,355천원 과다하게 산정하였음.

2) 보건지소 시설개보수 공사 발주 전 일상감사 미이행

추정금액 100백만원 이상 시설공사, 일상감사 이행(의뢰) 無

- “◆◆◆◆ ◆◆◆◆ 시설개보수 공사” 등 3건의 사업이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및 「거창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심사 및 제외 대상이 아니고,
- 각각 추정금액이 100백만원 이상으로 「거창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사업의 사전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3) 시설공사 최종 하자검사 미시행

하자담당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최종하자검사 미시행

- 보건소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최종 하자 검사조서와 함께 결과를 제출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처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 옥상 방수공사’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4)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 처리 부적정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233천원 감액(환수) 미조치

- 보건소는 2022. 7. 25.부터 2022. 9. 28.까지 시행한 “☆☆☆☆☆☆ 시설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착공한 후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함.

- 또한, “★★★★★★ 시설개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준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는데도, 233천원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기타분야

1)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부적정

권한이 없는 자(민간인)에게 보건진료소 무인경비장치 권한 부여

- 보건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 하면서, ‘○○보건진료소’의 출입문 무인경비장치의 권한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용자가 아닌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부여한 사실이 있음.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업무 소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금 지연 지급(32건)

- 보건소에서는 2018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확대 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32건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소홀

기간제 근로자 근로관계 종료 미통지(12건) 및 관리부서 미보고(15건)

- 보건소에서는 2018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또한,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연장 포함) 및 종료 시 관리부에서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보안업무 소홀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현행화 및 비밀문서 기록·파기 미이행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 까지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를 현행화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비밀문서 6건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0조와 「행정안전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2, 제37조의2에 따라 문서 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파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건의 비밀문서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